

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9. 2-----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2. 9. 2

다. 상정일자 : 제105회 사하구의회(정례회)

제2차 총무위원회(2002. 9. 7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조치승 총무과장)

### 가. 제안이유

학군, 생활권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구민불편이 있어 일제조사 및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타당성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여 구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신평동 중 신평제1동과 신평제2동의 지면을 조정

## 3. 관련법령 및 조례

○ 지방자치법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) 제5항

○ 사하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제2조(행정운영동의명

청,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)

**4. 검토의견**

-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학군, 생활권등이 관할 행정동과 다르게 확정 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신평2동 럭키무지개 아파트(2개통, 524세대, 1830명)를 신평1동으로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서,
  
- 해당지역 입주민 대다수(95% 찬성)가 찬성하고 해당동(신평1,2동) 구의원 및 동장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편의(관공서, 금융기관) 및 생활권(학교, 시장등)을 종합해 볼 때 행정구역 조정이 하루빨리 되어야 하므로 개정요구 조례안과 같이 통과시켜 운용함이 타당함

**5. 질의답변요지 : 생략**

**6. 토론요지 : 없음**

**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